

 <b>교육부</b>		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2. 18.(화) 배포</p>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
담당과	민주시민교육과	담당자	과장 사무관	신두철 (☎ 044-203-6642) 이항섭 (☎ 044-203-6701)	

**교육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학교 규칙을  
제개정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.**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경향신문(최인진 기자) / 2020. 2. 18.(화)
- 제목 : 첫 투표권인데...고교 들 중 한 곳 정치활동 하지마

**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**

-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, 제60조에 의거,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, 교육부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·개정할 것을 시·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.(20. 2. 12.)
  -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학생들의 유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